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7. 6 선고 2020가단212582(본소), 2020가단18865(반소) 판결
[부당이득금 ·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신 담당변호사 김지원

피고(반소원고) B

변 론 종 결 2021. 5. 25.

판 결 선 고 2021. 7. 6.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143,13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14.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2021. 4. 6.자 준비서면으로 지연손해금 비율 부분을 정정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2017. 10. 17. 개명 전 성명 D, 이하 개명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C’이라 한다)과 부부 사이였고, ‘E’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함께 운영하였다. 피고는 원고, C과 함께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임원으로 재직된 사임이다.

나. 원고는 2017. 4. 7.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300,000,000원 또는 400,000,000원을 중국 지역에서의 자동차부품 내장재 사업에 투자하되, 2017. 4. 30. 40,000,000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합작투자의향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 C은 2017. 4. 27. 피고와 사이에, 원고, C을 투자자, 피고를 피투자자로 하여, 자동차부품 내외장재 제조 및 판매(수출 포함)업에 400,000,000원을 투자하되 2017. 4. 27. 40,000,000원, 2017. 12. 30. 60,000,000원 등을 투자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서(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C의 계좌에서 2017. 5. 8. 피고의 계좌로 40,000,000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이 송금되었다.

마. 원고는 2017. 5. 1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투자약정서와 관련하여 원고가 지급받을 배당, 원고가 지급하기로 한 투자금, 사업을 경영할 경우 원고, C의 24% 지분에 4%의 지분을 추가하는 내용 등에 관한 공동운영지침(이하 ‘이 사건 공동운영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이 사건 공동운영지침에는 ‘원고 C 부부는 이혼 불가’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그 부분에 원고 명의 서명이 되어 있다.

바. F은 2017. 12. 11. 사업 목적을 자동차부품, 화학 및 화공원료 제조업, 수출입업 등으로 하고, C을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 원고를 감사, 피고를 사내이사로 하여 설립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7, 8,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투자약정에 따라 2017. 5. 8. 피고에게 이 사건 투자금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사업에 사용할 의사나 계획이 없었고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려고 하였음에도 수익을 줄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투자금을 사업 진행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업무상 횡령 및 사기 범행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4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5, 6,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투자금을 투자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

① C은 이 사건 투자약정서 작성에 투자자 중 1인으로 참여하였다. 이 사건 투자금의 지급은 이 사건 투자약정서 작성 이후 이 사건 공동운영지침 작성 전 이루어졌다.

② 이 사건 공동운영지침의 내용 중 이 사건 투자약정서의 투자자 부분과 관련하여

양립할 수 없는 부분, 즉 원고만이 실질적인 투자자이고 C이 명의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부분을 찾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 C의 지분에 관한 내용 등 C을 염두에 둔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공동운영지침 작성 사실과 그 내용만으로 이 사건 투자약정서의 투자자가 원고 1인이라고 볼 수 없다.

③ 이 사건 투자금이 송금된 날 C의 계좌로 H카드론 명의의 22,000,000원이, I(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C의 언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았다) 명의의 20,000,000원이 각 입금되었고, 위 입금 이후 피고에게 이체된 이 사건 투자금 40,000,000원은 위 돈 합계액의 일부이다. 원고는 자기 명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어 C 명의 계좌로 'E'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입금하여 사용하였고, 그러한 경위로 원고의 투자금이 C 명의 계좌에서 피고에게 이체되어 C를 투자자로 기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투자금은 위와 같은 경위로 형성된 것이지, 'E' 운영에 따른 수익금으로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

3. 반소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 측인 C, J(원고의 모친)으로부터 F에 입금된 돈은 합계 123,000,000원이다. 피고는 F의 계좌에서 원고 측인 C, J, I(C의 언니) 등의 계좌로 합계 138,964,000원을 되돌려 주었다. C이 대표이사로 있는 F은 2019. 12. 31. 폐업하였는데, 피고가 F에 대여한 돈은 합계 127,167,000원이다. 피고가 F에 입금한 금액은 합계 704,451,236원이고, 위 돈에서 원고 측이 F에 입금한 돈을 상호 상계하면 584,451,236원이 남는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 측에서 원고 측에 지급한 돈에서 원고 측에서 피고 측에 지급한 돈의 차액 내지 그중 일부인 143,131,000원(= 138,964,000원 + 127,167,000원 - 12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 C이 부부 사이였던 사실, C이 F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 원고가 F의 감사로 재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가 주장하는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기진석